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0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2. 13 —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12.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12. 21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심의 · 의결 및 군수의 자문(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원할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성 및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작고 내실 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원과 대상자를 재구성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폐지대상 안으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12.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